

##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(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).

### □ 대상 대출상품

- 신청대상
  - 고객 본인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
  - (예시) 이용 중인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가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에 해당
-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상 예시
  - 팩토링, 대체투자, 리스 등 신용상태와 금리의 연관성이 없는 상품

### □ 신청 방법

- ① 금융상품 취급부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(☎ 02-6268-6764)를 통해 신청 가능
- ② 금리인하 신청서류 제출

※ 준비서류 : 금리인하요구신청서(당사 홈페이지 금리인하요구신청서 출력 후 자필 기재), 행사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신분증 지참 등

### □ 신청 사유

#### □ 개인인 경우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소득·재산 증가 | 소득증가(취업, 승진 등)나 재산증가(자산증가, 부채감소)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|
| 신용도 상승   |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|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,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             |

#### □ 개인이 아닌 경우(개인사업자, 법인 등)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재무상태 개선 | 이익증가,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용도 상승  | 회사채 등급(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) 상승, 추가담보 제공,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|
| 기타      |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,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                     |

□ **결과 안내**

- 금리인하요구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(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) 이내에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전화, 서면, 문자메시지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- 또한, 당사에서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추후 재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.

□ **유의사항**

-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(예시 :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 등)
- 당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.